#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강민국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781

발의연월일: 2024. 9. 9.

발 의 자: 강민국 · 김상훈 · 권성동

이헌승 · 이종욱 · 김태호

윤한홍 • 박성민 • 박덕흠

조승환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퇴직한 임직원이 금 융관계법령상 제재조치 통보를 받은 경우 금융회사 임원취임이 제한 되고 있음.

「은행법」,「보험업법」 등 다른 금융관계법령과 달리 이 법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기 전 퇴직한 임직원에게는 제재조치 통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해당 임직원이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업하려는 경우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상 금융회사 임원취임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있음.

이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후 제재조치를 받기 전 퇴직한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내용을 통보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제재조치를 받기 전 퇴직한 임직원에게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상 금융회사 임원취임 제

한을 적용받게 함으로써 이 법에 따른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(안 제15조의3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장에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5조의3(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) ① 금융정보분석 원장은 금융회사등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중이었 거나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15조제3항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 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에 게 통보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은 이를 퇴임·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, 그 내용을 기록·유지하여야 한다.
  -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총 재 또는 금융감독원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하게 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) 제15 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위반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이후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에 대해 서도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제15조의3(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
	조치 내용의 통보) ① 금융정보
	분석원장은 금융회사등의 퇴임
	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
	임 중이었거나 재직 중이었더라
	면 제15조제3항에 해당하는 조
	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
	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
	당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통보할
	<u>수 있다.</u>
	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
	금융회사등의 장은 이를 퇴임ㆍ
	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
	고, 그 내용을 기록・유지하여
	<u>야 한다.</u>
	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대통령
	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
	은행총재 또는 금융감독원장이
	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
	는 자에게 위탁하여 제1항에 따
	른 통보를 하게 할 수 있다.